

장애 학생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 조치 고지 (2022년 6월)

다음 절차적 보호 조치는 21세까지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립 학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적격한 장애 학생에게 해당되며 학년 도중 22세 생일을 맞이한 학생은 학년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살 생일이 되기 전에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대상자로서 생일이 5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의 아동은 3살 생일 이후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연장 서비스를 선택했다가 최종 날짜에 결정을 번복하고 선택을 거부하여 귀하의 자녀가 새 학년을 맞기 전에 조기 아동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 또는 성인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주 법률 및 연방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교육 관련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 (IDEA) B조항은 장애아의 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통지문을 발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귀하에게 귀속된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학생의 교육구 (school district)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보호 조치 통지문은 1년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그러나 1차 심사 요청, 첫 이의 제기 접수, 일리노이 주 교육 위원회 (ISBE)에 대한 첫 적법 절차 이의 제기, 배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징계적 제외 조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ISBE 웹사이트의 '[학부모 안내 \(The Parent Guide\)](#)'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

일반 정보

지역 교육구는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문 (서면으로 명시된 특정 정보)을 다음 시기에 발송해야 합니다.

- 교육구가 식별, 심사, 교육 배정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료 공교육 (FAPE) 제공의 시작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 교육구가 식별, 심사, 교육 배정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 제공의 시작 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귀하의 자녀가 성년 (18세)에 도달하기 1년 전.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모든 교육적 권리는 학부모/보호자로부터 학생에게 양도됩니다.

서면 통보는 제안 또는 거부 조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기관의 제안 또한 거부 조치에 대한 설명;
- 2)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조치에 대한 사유 설명;
- 3)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의 근거가 된 각 심사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4) 장애아의 부모가 절차적 보호 조치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통지문이 심사를 위한 최초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를 설명하는 통지문의 사본을 입수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 5) 이 부분의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가 문의할 수 있는 기관;
- 6)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과 및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관한 설명; 그리고
- 7)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관한 설명.

공공 기관은 귀하가 받는 문서가 앞서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서면 통보에 IEP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을 개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IEP 팀이 아동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IEP에 명시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학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교육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구는 아동의 IEP가 이행되지 않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해야 하며, 지역 교육구에 보상 서비스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항목의 목적에 따라 '학교 수업일'에는 IEP 서비스 불이행과 관계 없는 이유로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는 날이나 서비스가 준비되었으나 아동이 이용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학교 모두가 편리한 시간에 IEP 회의가 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IDEA 규정에 따라 동의 및 통보하거나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을 포함하여 거부 사실 관계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통지문

통지문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서화된 언어가 아닌 경우, 지역 교육구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통지문이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번역되고, (b) 귀하가 통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c)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우편

교육구가 위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귀하는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수신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 통지문;
-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문; 그리고
- 적법 절차 이의제기 관련 통지문.

부모 동의

개요

정보에 기반한 귀하의 동의는 귀하에게 모든 관련 정보가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하가 해당 활동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역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보에 입각한 귀하의 서면 동의 (주 규정 양식 활용)를 받아야 합니다:

- 1차 심사 - 특수 교육 서비스 대상 아동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 평가 수행,
- 1차 서비스/배정 - 귀하의 자녀에게 처음 제공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 재심사 - 아동에 대한 재평가.

지역 교육구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기 전이나 지역 교육구가 모든 아동에게 시행되는 검사 또는 평가를 위해 모든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사 또는 기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동의 이후부터 철회 이전까지의 활동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동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4 페이지의 '동의 철회'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주 관내 피보호자 또는 돌봄 아동 대상 1차 심사 특별 규정

일리노이 주에서는 '피보호자 (Ward of the State)'를 '돌봄 아동 Youth in Care)'이라고도 합니다.

IDEA에서 사용하는 '피보호자'라는 용어는 다음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 1) 위탁 아동. 아동의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 또는 아동의 일반적인 보살핌을 책임지는 공공 기관이 아동의 위탁 부모에게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2) 주 법률에 따라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동;
- 3) 주 법률에 따라 법정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동; 또는
- 4) 공공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1차 심사에 한해 해당 아동이 주의 피보호자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공 기관은 아동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 심사를 위해 정보에 입각한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1)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구가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 2) 부모의 권리가 주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또는
- 3) 판사 또는 아동을 전체적으로 돌볼 책임을 가진 공공 기관이 교육적 결정을 내리거나 1차 심사에 동의할 권리를 부모 외의 개인에게 부여한 경우.

부모의 미동의

귀하가 다음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 **1차 심사** - 귀하가 1차 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중재 및/또는 적법 심의 절차를 통해 1차 심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심의가 열리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교육구에 귀하의 동의 없이 1차 심사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하의 자녀를 현재 배정된 교육 시설에 잔류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 **1차 서비스/배정** - 귀하가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의 1차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중재 또는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의 1차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IEP를 개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의무도 없습니다.

재심사 - 귀하가 재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중재 또는 적법한 심의를 통한 무효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귀하가 응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의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동의의 철회

귀하의 자녀가 현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취소(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두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교육구는 구두를 통한 철회 후 5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귀하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교육구는 철회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종료일이 표시된 서면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교육구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1)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귀하의 서면 동의 철회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IDEA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종단을 제안하는 사전 서면 통보를 적절한 시기에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3) 귀하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 또는 결정을 획득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예: 중재,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하의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5)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IEP 회의를 열거나 귀하의 자녀를 위한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 6) 동의 철회를 이유로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삭제하기 위해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귀하의 자녀는 일반 교육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교육 징계 보호를 포함하여 과거 귀하의 자녀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책임(이 문서에 명시됨)도 중단됩니다.

참고: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한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분량에 동의하지 않을 뿐,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불만 해결', '중재' 및 '적법 절차 심의' 항목을 참고하여 '서비스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의 권리'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회의 참석

귀하에게는 자녀의 식별, 심사, 적격성, 재심사 및 교육 배정 관련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교육구는 회의 개최일 10일 이전에 회의를 알리는 서면 통보를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목적, 상호 합의된 장소와 시간, 참석자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IEP 회의 관련 통보는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개인과 IEP 회의에 동행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 교육구에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통역사가 IEP 회의에서 통역의 역할만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구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역사가 통역의 역할로만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교육구가 비합리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장애인교육법 (IDEA)과 학교 규정 (School Code) 14항에 의거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적법 절차 심의, 주 정부에 대한 불만 처리 요청, 중재, ISBE 감독 및 시민권 사무국 이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귀하는 중요한 IEP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의 서면 번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회의 통지문* 양식 (ISBE 양식 34-57D)을 통해 번역된 문서를 요청하는 방법과 번역문 관련 문의나 불만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IEP 팀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배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는 개별 전화 또는 콘퍼런스 콜 등 귀하가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귀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IEP 팀에서 자녀의 서비스 및 배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구는 상호 합의한 회의 시간과 장소 결정에 관한 기록, 자세한 통화 또는 통화 시도 내역, 그러한 통화의 결과, 귀하에게 보낸 서신이나 답신의 사본, 귀하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한 세부 내역 또는 그러한 방문의 결과와 같은 증거가 포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4세 6개월 (또는 IEP 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른 시기)에 특수 교육을 받는 아동에 대한 통보는 회의의 목적이 자녀의 전환 서비스 요건을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와 기타 기관의 대표자를 회의에 초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청각 장애인이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회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EP 팀은 최소 매년 1회 회의를 열어야 하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동을 위한 IEP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IEP 연례 회의가 끝나면 귀하와 학교는 아동의 IEP를 수정하기 위한 IEP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IEP는 서면을 통해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IEP 팀 구성원들은 변경 사항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또는 아동의 IEP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 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또는 IEP 회의가 학부모의 서면 동의 하에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예정된 경우 가능한 이른 시기)에 IEP 팀이 회의에서 검토할 모든 서면 자료의 사본을 귀하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 또는 학교에서 자료를 수령하는 것 등 다양한 발송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연방법 및 주 법률의 요건에 따라 특수 교육 적격성 검토 회의 또는 IEP 검토 회의 전에 자녀의 학교 학생 기록부를 검토 및 복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절차

지역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를 심사할 때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귀하의 자녀를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인종, 문화, 언어 또는 장애로 인해 귀하의 자녀에게 편견이 없는 기술적으로 건전한 도구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자료와 절차를 제공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차 심사

귀하 또는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에 대한 1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심사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사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심사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 A) 교육구는 심사 자료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개인 (귀하 포함)으로 구성된 팀을 소집합니다. 팀의 구성은 아동의 증상 및 기타 관련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B) 팀은 심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검사를 확인하고 귀하에 대한 서면 통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보를 통해 각 영역에서 필요한 검사를 설명하거나 검사가 불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C) 교육구는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의 동의 요청과 함께 팀의 결정이 포함된 통지문을 수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귀하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교육구는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한 날짜 이후 해당 학년의 잔여 수업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적격성 결정과 IEP 회의는 다음 개학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된 팀이 수행하며 귀하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읽기, 수학 또는 제한된 영어 능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장애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구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비적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 정부의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귀하와 학교가 재심사의 불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교는 1차 심사 후 최소 3년마다 귀하의 자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독립적 교육 심사

일반

귀하는 IEP 회의 종료 후 '학부모/보호자 회의 권고 사항 통지문' 사본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통지문은 팀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적 교육 심사(IEE)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

- '**독립적 교육 심사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지역 교육구가 고용하지 않은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하는 심사.
- '**공공 비용 (public expense)**': 교육구가 심사 비용 전액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지원하는 비용.

공공 비용으로 심사를 진행할 부모의 권리

귀하는 지역 교육구의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 교육구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중 한 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에 동의하고 공공 비용으로 IEE를 제공하거나; 또는
- 교육구의 심사가 적절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개시.

지역 교육구는 귀하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물을 수 있지만, 귀하의 미동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심사를 비합리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IEE 비용 지불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 교육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EE가 공공 비용으로 진행될 때마다 심사 장소 및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한 심사의 기준은 해당 교육구가 심사를 시작할 때 활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심의를 시작하고 심의 담당관이 심사를 명령하는 경우, 심사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이 교육구의 심사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귀하는 IEE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심사를 교육구와 공유할 때 심사 결과가 공공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는 적법 절차 심의에서 IEE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는 공공 비용 또는 사비로 진행된 IEE 보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IEP 팀으로 하여금 결과 검토를 위한 회의 날짜가 명시된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학부모의 일방적 배정 요건

이 항목에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사립 (종교 관련 학교 포함) 학교/시설에 배정할 때 귀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요

사립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주에 거주하면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고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식별 (Child Find)'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사립 학교 또는 홈스쿨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학생 식별' 절차에서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식별 및 심사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 설명된 권리는 귀하의 자녀를 사립 학교/시설에 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애아를 사립 학교에 배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공립 학교에 등록할 때 가능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 특수 교육 서비스는 사립 학교에 등록된 동안에도 제공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금액은 아동의 사립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립학교 대표 및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의 학부모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는 사립학교의 서비스에 지정되는 제한적인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공립학교가 귀하의 자녀에게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비스 계획 (Service Plan)'이 수립되고 실행됩니다.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에는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방법, 장소 및 제공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은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아의 부모가 자녀를 배정한 사립학교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반영해야 하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IEP 내용에 대한 IDE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FAPE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은 'B조항'에 따른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이들의 IEP는 일반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 (LEA)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애아의 학부모가 자녀를 배정한 사립학교 학생을 위해 수립되고 실행되는 제한적인 서비스 계획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서비스 계획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IEP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모가 자녀를 배정한 사립학교의 장애아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를 유의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립학교 배정에 따른 환급

공립학교에서 FAPE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시키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사립학교 등록 이전에 교육구가 적시에 FAPE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이나 심의 담당관은 해당 등록 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할 것을 교육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이 정한 상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립학교에서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키기 전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귀하의 우려와 비-공립학교나 시설에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제안한 배정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IEP 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공립학교에서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키기 10일 전에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귀하의 우려 사항과 비-공립학교 또는 시설에 자녀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제안한 배정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IEP 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공립학교에서 귀하의 자녀를 퇴학시키기 전에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를 심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하에게 알렸지만 귀하가 그러한 심사를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귀하가 취한 조치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음의 경우 교육구가 해당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상환 비용이 차감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영어로 읽고 쓸 수 없는 경우;
- 통보 요건을 준수하면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해당 통지문의 발송을 방해했을 경우; 또는

- 귀하가 위에 언급된 통보 요건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학생의 행동이 자신의 학습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포함한 전략을 자녀의 IEP 개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교직원은 자녀를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의 정의

학부모가 학생의 징계 위반으로 학교로 학생을 데리러 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제거 조치는 규정에 따라 '정학'으로 간주됩니다. **정학 또는 퇴학 처분에는 학교 및 모든 학교 활동의 중단 또는 제외 및 학교 운동장 출입 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정학(학년 중 10일 미만)

귀하의 자녀가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직원은 귀하의 자녀를 학기 중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현재 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유사한 상황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학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 정학 (학년 중 총 10일 이상)

다음의 경우, 학생의 현재 교육 배정에서 장애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배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 1) 연속 10일 이상의 수업일 동안 정학하는 경우; 또는
- 2)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습관적인 연속 제외 조치를 받는 경우:
 - a) 한 학년도에 총 10일을 초과하는 연속적인 제외 조치;
 - b) 학생의 행동이 과거 연속적인 제외 조치를 초래한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때; 그리고
 - c) 각 제외 조치의 기간, 총 제외 시간, 짧은 제외 조치 간격 등의 추가적 요소.

배제 패턴이 배정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구가 사례별로 결정하며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업일 기준 총 10일 이상의 징계 제외 조치가 끝나면 해당 교육구는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귀하의 자녀를 담당하는 한 명 이상의 교사와 상의한 후, 귀하의 자녀가 계속해서 일반 교육 과정 -- 다른 장소에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외 기간 동안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기 중 총 10수업일을 초과하는 징계 제외 조치를 배정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결정 사항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제외 결정이 내려진 당일 절차적 보호 조치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귀하의 자녀를 담당하는 한 명 이상의 교사와 협의하여 제외 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개입 서비스 및 교정을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IEP 회의는 가능한 한 빨리 소집되어야 하지만, MDR (징후 판정 검토)을 수행하기 위해 제외 결정이 내려진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는 소집되어야 합니다.

징후 판정 검토 (MDR)

IEP 팀은 MDR을 수행할 때 아동의 IEP, 교사 관찰 및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기록부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IEP 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학생의 행동이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또는
- 학생의 행동이 교육구가 자녀의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했는가.

팀이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귀하의 자녀가 보이는 행동은 장애의 징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학교구는 학생의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거나 행동 중재 계획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A. 장애의 징후가 있을 때

아동의 행동이 장애를 나타낸다는 판단 하에, IEP 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단, 학교구가 배정 변경을 초래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고 행동 중재 계획 (BIP)을 수립해야 합니다;
- BIP가 수립된 상황에서 이를 검토하고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 학생이 마약, 무기 및/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옮겨진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학교구가 배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녀를 기존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임시 대안 교육 환경 [IA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B. 장애의 징후가 아닐 때

귀하의 자녀가 보이는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 절차는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장애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 제외된 경우 FAPE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예외로 합니다.

지역 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 적법 절차 심의

귀하는 징계 배정 또는 MDR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지역 교육구 또는 ISBE는 긴급 심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를 현재 학교에 그대로 배정하면 귀하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의 배정을 IAES로 변경하기 위해 긴급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귀하의 자녀가 보이는 행동이 장애의 징후인 경우에도 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심의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임시 대안 교육 환경 (IAES)

IAES는 징계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환경을 말합니다. 교육 장소는 IEP 팀이 결정하며 귀하의 자녀가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 교과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현재 IEP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IE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대안 환경에는 교육 제외의 원인이 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다음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어도 귀하의 자녀를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IAES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나 학교 시설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 불법 약물 고의 소지 또는 사용, 학교 또는 학교 시설에서 금지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및/또는
- 학교나 학교 시설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IAES 이동은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로 인한 것인지의 판단 여부와 관계 없이 수업일 기준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에 이의 제기를 위한 긴급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와 교육구의 특정 합의가 없다면 심의가 계류 중인 기간 동안 또는 수업일 기준 45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귀하의 자녀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잔류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최초 45-수업일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귀하의 자녀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긴급 심의 및 대안적 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적격성 판정이 완결되지 않은 학생의 보호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자격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지만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장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귀하는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학교구가 학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귀하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을 통해 알렸을 경우;
- 학생의 행동이나 학교 활동에서 특수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는 경우;

- 귀하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했을 경우; 또는
- 교직원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이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기타 적절한 교육구 직원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요청했을 경우.

다음의 경우, 학교구가 학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귀하가 자녀에 대한 심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 귀하가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 심사 실시 결과 귀하의 자녀에게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 교육구가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결정에 대해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

지역 학교구가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학생은 유사한 행동을 한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학생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당국이 배정한 학교에 잔류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학생이 장애 학생으로 결정되면 지역 교육구는 적절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의뢰 및 조치

지역 교육구 또는 기타 기관은 장애 학생의 범죄 사실을 적절한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연방법 및 주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 또는 기타 기관은 장애 학생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해당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의 사본을 적절한 관할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불만 해결 절차

학생의 식별, 평가, 교육 배정 또는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지역 교육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장애를 가진 귀하의 자녀 또는 여러 장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명과 함께 ISBE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를 위한 공식 진정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담당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진술;
-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 관련 학생 및 해당 학교의 이름과 주소;
- 진정자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문제의 성격에 관한 설명; 그리고
- 알려진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실에 대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ISBE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ISBE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현장 조사 실시.
불만 제기 관련 추가 정보 제출 기회 부여.
- 진정의 대상인 공공 기관에 진정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구. 공공 기관은 시정 조치 준수 증빙 서류, 답변서 및 기타 문서 일체를 공공 기관이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ISBE, 진정서를 제출한 부모, 개인 또는 단체에 발송해야 합니다.
- 진정 처리 과정에서 공공 기관에 불만 해결 방안, 귀하의 중재 참여 권유 또는 분쟁 해결의 대안적인 수단 등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관련 정보를 모두 검토하고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 요건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 사실 및 결론, ISBE의 결정 이유, 시정 조치 명령을 포함하여 각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시정 조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시간 제한이 연장되거나 귀하와 교육구가 중재와 같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논의하지 않는 한 60일 내에 시행됩니다.

진정 내용에 적법 절차 심의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1건 이상 있는 경우, 진정의 해당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또한 적법 절차 심의에서 동일한 당사자와 관련하여 이미 결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심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및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ISBE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be.net/Pages/Special-Education-Effective-Dispute-Resolution.aspx>

중재 서비스

일리노이주는 아동 대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류 중인 적법 절차 심의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를 이용하여 적법 절차 심의를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와 교육구 모두 중재 절차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ISBE가 관리하고 감독하며 귀하와 학교구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효과적인 중재 기술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와 연관된 법률과 규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공정하고 자격을 갖춘 중재자가 담당합니다. 중재자는 공정한 제3자로, 어느 일방의 행동을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재 참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당 3명으로 제한합니다. 귀하는 변호사, 옹호자, 통역사 및 기타 관련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의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향후 적법 절차 심의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자는 자녀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포기할 것을 귀하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다음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는 대안 제안; (b) 상대방이 발언하는 문제 경청; (c) 자녀의 능력과 지역 학교구의 의무 및 자원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귀하와 권한을 가진 교육구의 대표자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중재에 의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배정된 교육 시설을 변경하려는 교육구의 제안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잔류 (stay-put)' 조항이 적용됩니다. '잔류' 배정 장소는 양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나 독립한 학생)는 적법 절차 심의 신청을 거부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잔류' 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로도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나 독립한 학생)는 중재 절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잔류'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중재 사실과 합의서의 조건을 중재 결과로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후속 행정 조치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자에게 후속 *행정 조치 또는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중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SBE 특수 교육부 전화 (217) 782-5589번 또는 학부모 전용 무료 전화 (866) 262-66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해결 절차 및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ISBE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be.net/Pages/Special-Education-Effective-Dispute-Resolutio.aspx>

적법 절차 심의

적법 절차 심의 신청

귀하는 중재 및 주정부의 진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는 심의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귀하와 교육구 모두의 증언을 들은 다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귀하는 학생의 식별, 심사 또는 교육 시설 배정이나 FAPE 관련 조항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한 학교구의 제안이나 거부와 관련하여 적법 절차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 신청의 경우, 지난 2년 이내 또는 귀하가 자녀의 배정과 관련된 학교구의 조치에 대해 합당하게 인지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신청을 지원하는 지역 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 목록을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거주하는 학교구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학생의 이름과 주소;

-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된 계획이나 변경 사항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 현재 귀하가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문제 해결 방법.

학교구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등기 우편을 통해 ISBE에 연락하여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관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위한 기본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교육구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1차 심의 신청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추가할 수 있는 수정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는 교육구의 동의 또는 심의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의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수정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심의 일정을 재개하고 새로운 해결 절차 및 사전 심의 회의를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에 앞서 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의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련 IEP 팀원 및 귀하를 회의에 소집합니다. 사전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심의 신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논의하여 해당 교육구에 분쟁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전 회의는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교육구의 적법 절차 심의 신청에 관한 심의 신청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구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 귀하의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의 변호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 적법 절차 심의 신청에 관한 논의에 귀하의 참석을 허용해야 합니다.

귀하와 교육구는 서면으로 사전 회의를 포기하거나 앞서 설명된 대로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차후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귀하와 권한을 가진 교육구의 대표자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합의서 조항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합의 무효 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 심의 신청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의는 속행됩니다. 적법 절차 심의의 일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귀하와 교육구 양측이 분쟁 해결 회의 포기 또는 중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적법 절차 심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분쟁 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는 지연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귀하가 분쟁 해결 절차를 이행하는 교육구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관이 귀하의 심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담당관의 임명

ISBE는 공정한 심의 담당관을 임명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기관의 직원이거나 심의의 객관성에 반하는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 절차 심의의 각 당사자는 당연한 권리로 심의 담당관을 1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의 임명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ISBE에 서면으로 심의 담당관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와 교육구가 같은 날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문서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ISBE는 심의를 처음 요청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간주합니다. 심의 담당관 교체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적절한 교체를 요청하면 ISBE는 3일 이내에 무작위로 다른 심의 담당관을 선정하여 임명합니다.

ISBE는 심의 담당관의 임명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 전에 심의 담당관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고사하는 경우, 다른 심의 담당관을 임명합니다.

사전 심의 회의

귀하와 교육구가 해결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적법 절차 심의의 요건이 진행됩니다. 심의 담당관이 시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앞서 명시된 분쟁 해결 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심의 진행에 앞서 당사자들을 사전 심의 회의에 소집해야 합니다.

임명된 심의 담당관은 ISBE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전 심의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전 심의 회의는 귀하 및 교육구와의 협의 하에 심의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전화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교육구는 사전 심의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 1) 심의에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 2) 심의에 출석할 증인;
- 3) 심의에서 사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문서 목록.

사전 심의 회의에서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가 심의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수정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새로운 분쟁 해결 과정 및 사전 심의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된 심의 신청서 제출로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적법 절차 심의 신청' 항목 참조)

사전 심의 회의가 끝나면 심의 담당관은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 기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문제, 문제 제기 순서 및 당사자 또는 증인을 위한 일정 조정 사실;
- 당사자 또는 심의 담당관이 제기한 문제의 경우 문서 또는 증인의 관련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 사전 심의 회의에서 결정된 (또는 합의된) 사실 목록.

심의 사전 권리

귀하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장애 학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진 개인 및 대변인과 동행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학생과 관련된 모든 학교 기록을 검토 및 열람하고 그러한 기록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교육구의 독립적 심사 기관 목록을 열람하고 자비로 학생에 대한 독립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출할 증거에 대한 심의에 앞서 최소 5일 전에 통보를 받을 권리;
- 지역 교육구 직원이나 학생의 필요, 능력,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타 관련인의 심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심의 중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전체 행정 및 사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의 배정 및 자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 교육구의 장후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육구가 학생을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배정을 변경하기 위해 긴급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심의 진행 중 권리

귀하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공평하며 질서 있는 심의에 참여할 권리;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뒷받침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증언 및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권리;
- 일반인에게 심의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
- 귀하의 자녀를 심의에 참석시킬 권리;
- 증인과 대면하고 반대 심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 심의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비공개 증거의 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심의

ISBE와 심의 담당관은 심의 담당관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시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심의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문제, 제출된 증거 및 증언에 입각한 사실 확인, 심의 담당관의 법률 및 명령의 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심의 신청서에서 제기된 (심의 전에 당사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사례의 사실에 근거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FAPE 제공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긴급 심의

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장애 학생 징계'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징계 문제로 인해 현재 교육 배정에서 귀하의 자녀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교육구의 조치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심의는 일반 적법 절차 심의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 적법 절차 심의와 긴급 심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심의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긴급 심의는 심의 신청서 접수 후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 긴급 심의에 따른 결정은 심의 종료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 임명된 심의 담당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명 요청

결정이 내려진 후, 심의 담당관은 어느 한 당사자가 최종 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목적으로만 사례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을 할 때는 결정 사항의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 심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 및 ISBE에 우편으로 요청서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의 특정 부분에 대해 소명하거나 요청에 대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적법 절차 심의 종료 후 심의 담당관의 최종 명령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서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내의 관할 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절차는 소송을 제기할 법원 내 서기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정 유예

적법 절차 심의 또는 모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의 자녀는 심의 신청서 제출 당시의 자격 상태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고 현재 배정된 교육 시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징계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의 배정을 변경하고 이 배정이 긴급 심의 요청의 사유인 경우, 교육구의 신규 배정은 긴급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8페이지 '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항목 참조)

변호사 비용 보상

IDEA에 의거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관할 법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귀하가 적법 절차 심의 과정에서 귀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가로 변호인 (무면허 대리인 또는 기타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음 대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승소한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악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 없는 진정서 제출 또는 후속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의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주 교육 기관(SEA) 또는 교육구;
-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 또는 후속 소송 제기가 방해, 불필요한 지연 또는 비합리적인 소송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승소한 SEA 또는 교육구;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따라 소송이나 소송 절차가 발생한 지역의 일반적인 요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은 비합리적인 요금 청구, 불필요한 소송 절차 지연 또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및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ISBE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be.net/Pages/Special-Education-Effective-Dispute-Resolution.aspx>

교육적 대리 부모

지역 교육구는 학생의 입학과 함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식별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하거나 아동이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주의 피보호자이며 해당 복지 시설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의 대표자는 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ISBE에 대리 부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정부의 피보호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보육을 감독하는 판사가 대신해서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없는 노숙 학생의 경우, 교육구가 대리 부모를 지정합니다.

양부모 가정이나 친척이 양육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은 교육적 대리 부모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부모나 친척 양육자는 해당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대변합니다.

학교에서 귀하를 대리 부모로 지정하는 경우, 이 문서에 설명된 모든 권리는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관여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이거나 아동과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아동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복지 시설의 직원인 경우, 해당 시설이 아동에게 비교육적인 보육만 제공한다면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적 대리 부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 대리 부모는 식별, 심사, 교육 배정 및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아동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 열람

지역 교육구는 아동의 교육 기록을 비공개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

- '**파기 (destruction)**': 정보에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교육 기록 (education records)**': 가족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교육 기관이나 교육 기관의 대행 단체가 유지 및 관리하는 기록.
- '**참여 기관 (participating agency)**':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해당 정보의 출처가 되는 모든 교육구,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식별 가능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
 - a) 아동, 학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 b) 아동의 주소;
 - c) 아동의 사회 보장 번호, 학생 번호 등 개인 식별자; 또는
 - d) 아동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 특성 또는 기타 정보의 목록.

열람 권한

학부모는 자녀와 관련하여 교육구가 수집, 관리 또는 이용하는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식별, 심사 또는 배정과 관련된 모든 회의가 열리기 전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교육 기록에 대한 검토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기록 검토 및 사본 요청에 대해 공식 기록 보관인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다음 사유를 들어 근무일 기준 5일에 한해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지리적으로 먼 곳이나 여러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 기록 요청으로 상당량의 특정 기록을 수집해야 하는 경우;
- 기록 요청으로 광범위한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
- 기록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 기록 요청으로 교육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또는
- 기록 요청으로 다른 공공 기관 또는 교육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육구가 기간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기록 검토 및 사본 요청에 대한 승인은 기록을 요청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할 권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교육구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 학부모의 대리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할 권리; 그리고
- 교육 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록이 정상적으로 보관되는 위치에서 해당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에 사본을 요청할 권리.

지역 교육구는 귀하가 후견인, 별거 및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할하는 해당 주정부 법률에 근거하여 기록 열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조언을 받지 않는 한 귀하에게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는 기록 공개 요청에 따라 교육구에서 수집, 관리 또는 이용하는 교육 기록의 종류 및 보관 장소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구는 아동의 IEP에 따라 관리되는 관련 서비스의 전달 상황을 기록한 일지와 진행 중인 관련 서비스 각각의 종류를 기록한 내역을 작성하고 귀하의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언제든지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구는 학년 시작 후 수업일 기준 20 이내 또는 IEP 수립 즉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역 교육구는 말하기 및 언어 치료 서비스, 작업 치료 서비스, 물리 치료 서비스, 학교 사회 복지 서비스, 학교 상담 서비스, 학교 심리 서비스 및 학교 보육 서비스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연구에 입각한 과학적인 개입 또는 지원 절차의 다단계 시스템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수집 및 검토한 모든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 검색, 열람 및 사본 발급 수수료

지역 교육구는 정보 검색이나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 기록 사본 발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페이지당 \$.35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학생이 기록의 사본 발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 기록

주정부 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구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는 당사자의 이름, 자료 열람 날짜, 당사자가 기록 이용을 승인받은 목적 등 (단, 학부모 및 지역 교육구의 권한을 가진 직원 제외) 수집, 관리 또는 이용된 교육 기록을 당사자들이 획득한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교육 기록에 1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 검토 및 열람하거나 그러한 특정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귀하가 자녀의 기록에 있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에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구는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정보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거부 사실을 알리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심의 신청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록물 심의

교육구는 학부모의 기록 수정 요청 시 아동의 기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록물 심의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적법 절차 심의가 아니고 ISBE가 지정한 심의 담당관이 주재하지 않으며 지역 차원에서 열리는 심의입니다.

기록물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교육구는 정보를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록물 심의 결과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거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언급하거나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적시한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구는 해당 기록이나 이의 제기 정보를 보관하는 동안 아동의 기록에 기재된 모든 소명 자료를 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해당 기록을 어느 한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소명 자료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가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FERPA)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참여 기관 담당자 외의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IDE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참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공개할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 식별 정보를 전환 서비스 (transition service)를 제공하거나 전환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하는 참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공개할 때 학부모의 동의 또는 주정부 법률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적격한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귀하의 자녀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구에 속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의 담당자와 귀하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담당자가 공유하려면 귀하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

학생의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각 참여 기관은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각 참여 기관의 담당자 1인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B 조항 및 FERPA에 따라 기밀 유지에 관한 교육이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참여 기관은 공개 조사를 위해 개인 식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 내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가 기재된 최신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 파기

교육구는 IDEA의 B조항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이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가 귀하의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귀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각 학교는 학생이 전학, 졸업 또는 영구 퇴학한 후 최소 60년 동안 학생의 영구 기록과 포함된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 각 학교는 학생이 전학, 졸업 또는 퇴학한 후 최소 5년 동안 학생의 임시 기록 및 포함된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FERPA는 교육 기록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를 학생이 18세가 되면 학생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DEA B조항 역시 교육 기록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를 18세가 된 학생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IDEA B조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부모 권리 양도

귀하의 자녀는 18세에 성인 학생이 됩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학부모의 모든 권리는 해당 교육구가 달리 통보하지 않는 한 18세가 된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학부모는 필요한 사전 서면 통보를 수령할 권리를 자녀와 공유하며 학교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IEP에는 귀하의 자녀가 17세 생일을 맞은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권리가 18세 생일에 이전된다는 사실을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 회의에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리 위임**' 양식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성년에 도달했을 때 귀하 또는 다른 개인이 자신의 교육적 이익을 대변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지역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위임**' 양식은 귀하의 자녀가 가진 교육적 권리를 대변할 개인을 명시하고 해당 개인과 자녀의 서명 (또는 녹음, 녹화 등 학생의 장애를 고려한 다른 수단을 통한 증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권리 위임을 종료하고 스스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리 위임은 서명 후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 가능합니다.

이상 학부모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작성했으며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가 일리노이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2004년 재승인된 장애인 교육법 (IDEA 2004)은 2004년 12월 3일에 공식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의 법 조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SBE는 수정된 연방법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귀하의 권리에 관하여 알리기 위해 이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발달 장애부 소개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발달 장애부서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된 개인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은 개인이 실제 선택과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속한 전체적인 주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밀접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개인이 더욱 더 발전하고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받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 (IDHS)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자동 안내 도음 라인:
1-800-843-6154 또는
1-800-447-6404 (TTY)

다음 시간대에는 안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8:00 - 오후 5:30
월요일 - 금요일 (주정부 공휴일 제외)

다음 자동 안내 번호는 발신인을 지역 DD 서비스 정보로 안내합니다:
1-888-DDPLANS 또는
1-866-376-8446 (TTY)

다음 주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319 East
Madison, 4N
Springfield, IL 62701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dhs.state.il.us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프로그램, 활동 및 고용 기회는 나이,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민족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나 그룹에게 열려있으며 접근 가능합니다. 복지국은 기회 균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이며 합리적인 지원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DHS 4313C (R-1-22) Understanding PUNS

Printed by the Authority of the State of Illinois. 



일리노이주
公共服務部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UNS 이해하기 PUNS 안내



PUNNS에 등록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PUNNS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 PUNNS는 지원 서비스를 찾고 있거나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주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주정부는 재정 지원이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될 개인을 선정하고, 제안을 개발하며 예산을 위한 자원 및 향후 필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왜 PUNNS에 등록해야 하나요?

-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PUNNS에 개인을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PUNNS 에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 서비스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입니다
- PUNNS 등록 과정에서 가족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보호자/간병인/가족과 함께)은 독립 서비스 코디네이션 (Independent Service Coordination, ISC) 에이전트를 만나게 됩니다.
- ISC 에이전트는 발달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PUNNS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언제 PUNNS 정보는 업데이트되나요?

- 최소 매년마다 ISC 기관이 해당 가족에게 연락
-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때 마다
- 주소나 전화번호등 연락처 정보 변경시
- 간병인의 정보 변경시

PUNNS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개인의 나이와 현재 상황 (계획 또는 찾는 중) 및 PUNNS에서 기다린 시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언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 PUNNS 선정은 지원금 여부 및 프로그램의 공석이 채워지는 속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PUNNS에 선택된 개인은 복지국으로부터 선정되었으며 ISC7관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는 초청 편지를 직접 받게 됩니다.



PUNNS의 등록하고 있는 동안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은 ISC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 가능한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 위기 상황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PUNNS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사항: PUNNS의 등록이 서비스의 자격 조건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IDHS의 발달 장애부서가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